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6 선고 2021가단2267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1. 3.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0. 9. 27.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43.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D 주식회사는 2012. 12. 27.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각 순차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1차전12011호로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9. 8. ‘C는 원고에게 18,350,433원 및 그 중 3,317,599원에 대하여 2021.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9. 30.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은 2020. 9.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와 C, G(각 상속지분 1/3)가 있었는데, 피고와 C, G는 2021.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원금 합계 6,940,5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단독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C가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분할협약이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용회복지원승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신용회복지원승인을 받아 매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C가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고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C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감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만약 C가 변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C의 채무에 관한 채무조정승인의 효력은 상실되는 점, 나아가 I위원회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결정은 취소되고

채무자는 조정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신용회복지원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이 사건 분할협의로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고에게 더 값을 돈이 남아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역시 C에 대한 채권자이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가 피고로부터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별지